

게임소프트웨어 판권에 관한 서비스제휴 계약분쟁 - 개발사에게 불리한 수익정산비율 이  
유로 계약무효 주장 - 불인정 + 현저한 불공정 이유로 하는 계약무효의 판단 기준: 서울  
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2064126 판결



게임서비스 제휴계약 및 수익정산 비율

	B 계약	C 계약								
계약일	2015. 5. 29.	2016. 4. 1.								
게임명	D(E, F 등에서 변경됨)	C								
주요내용										
<p>제3조 피고의 의무 및 책임</p> <p>(1)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내에 원고 게임을 위한 독립 서비스 사이트를 제작, 유지보수하고,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2) 피고는 원고가 원고 게임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 자체 개발 및 운영중인 백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원고가 요청하는 추가적인 기능에 대한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p> <p>제4조 원고의 의무 및 책임</p> <p>(1) 원고는 원고 게임의 상표출원, 로고제작, 현지화, 이벤트, 업데이트 등 한국 내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책임지고, 관련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p> <p>(4) 원고는 피고가 원고 게임의 독립 서비스 사이트를 원활히 제작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요청사항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한다.</p> <p>제9조 수익분배 및 대금 정산</p> <p>(1) 원고와 피고는 유료서비스 개시일부터 총매출액 및 수익분배금액에 대하여 매월말 기준으로 정산한다.</p> <p>(3) 피고는 매월 &lt;별첨#2 게임별 정산비율&gt;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하 "수익분배액"이라 한다)을 지급받는다.</p> <p>(7) 피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10일 이내에 피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 결재한다.</p> <p>&lt;별첨#2 게임별 정산비율&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포털</th> <th>"순매출" 기준</th> <th>피고</th> <th>원고</th> </tr> </thead> <tbody> <tr> <td>티엔티게임</td> <td>정산비율(결제수수료</td> <td>3%</td> <td>97%</td> </tr> </tbody> </table>			포털	"순매출" 기준	피고	원고	티엔티게임	정산비율(결제수수료	3%	97%
포털	"순매출" 기준	피고	원고							
티엔티게임	정산비율(결제수수료	3%	97%							

	6% 제외)		
네이버게임, 다음게임, 온게이트, 피카온, 피망, 게임매니아 등	정산비율(결제수수료 11% 및 채널링수수료 30~35% 제외)	4%	96%
푸푸게임	정산비율(결제수수료 11% 제외)	1%	99%
네이트, 줌	정산비율(결제수수료 및 채널링수수료 30~33% 제외)	1%	99%

**개발사의 계약무효 주장요지**

제 2 계약을 체결할 무렵 회사 운영이 어려울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됨. 개발사의 공박 상태를 이용하여 수익분배율이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함

### **판단 기준 법리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2)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공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공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공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구체적 사안의 판단

“제 2 계약 체결 당시 피고 개발사가 경제적 공박 상태에 있었고 원고 제휴사가 이를 알면서 이용하였으며 나아가 제 2 계약에 따른 급부 및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개발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2064126 판결

기업법무, 기술법무, 계약분쟁, 제작납품계약,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